

환경영향평가업 []폐업
[]휴업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즉시
기관(업체)명칭				
등록번호		등록일		
평가담당부서 소재지				
폐업(휴업) 일				
사유				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폐업·휴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처리절차

